옥외광고물 설치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 · 지역 · 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자 1
1.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5
1.1.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5
1.1.1.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5
1.1.2.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10
1.2. 옥외광고사업자 12
1.2.1.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12
1.2.2.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15
2.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20
2.1.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20
2.1.1.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20
2.1.2.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22
2.1.3.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23
2.2.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25
2.2.1.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25
2.2.2.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28
2.3.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30
2.3.1.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30
3.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34
3.1.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34
3.1.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34
3.1.2. 허가 및 신고 절차 37
3.1.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39
3.2.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41
3.2.1. 도로점용허가 신청 41
4.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44
4.1.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44
4.1.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44
4.1.2.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46
4.2.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49
4.2.1.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49
4.2.2. 옥상간판 52
4.2.3.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56
4.2.4. 공연간판, 현수막 59
4.2.5. 애드벌룬 62
4.2.6. 벽보 및 전단 63
4.2.7.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65
4.2.8. 선전탑, 아치광고물 69
4.2.9. 창문 이용 광고물 70
4.2.10.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72
4.3.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73
4.3.1. 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73
4.3.2. 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76
4.3.3.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77
5.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80
5.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80
5.1.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80
5.2.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84

5.2.1.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84

1.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1.1.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1.1.1.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의 개념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구분	종류
교통시설	√ 지하도 √ 철도역 √ 도시철도역 √ 공항 √ 항만 √ 고속국도
교통수단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 √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함) √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 건설기계 √ 대여자전거

> ※ **디지털광고물**
>
>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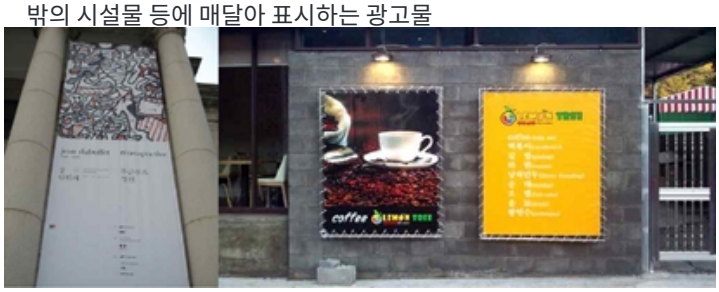
▪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17가지로 분류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지주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

1. 벽면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3. 옥상간판
4. 지주 이용 간판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창문이용 광고물
9. 특정광고물

1.1.2.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옥외광고물 설치절차 개관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또는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도시지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

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

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

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1.2. 옥외광고사업자

1.2.1.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옥외광고사업"이란?

옥외광고사업의 개념

▪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사업 등록의무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6).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교육**
>
> -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
>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 √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 -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수수료의 납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발급 및 영업장내 게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5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등록증의 재발급

▪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여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위반 시 제재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6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 재개업의 경우: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새로운 등록증의 발급

▪ 옥외광고사업의 재개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개업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

1.2.2.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

▪ 일반기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7)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합니다.

▪ 개별기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7)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			
가. 무허가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의2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위 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다. 위 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 이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

행정처분의 통보

▪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 시장 등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 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위의 요청을 한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2.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2.1.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2.1.1.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표시·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가 가능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 자사광고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2.1.2.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구분	내용
카지노업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
경마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과 경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표시 금지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구분	내용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위반 시 제재

▪ 위의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 위의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 등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2.1.3.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참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옥외광고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경고문구

복권 옥외광고물의 경고문구 기재

▪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옥외광고물(판매촉진활동 포함)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1항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위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제1항제2호).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공원구역에서의 입간판 설치 제한

▪ 공원구역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광고물

사행행위 또는 도박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게시 제한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8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광고물의 무단첩부 금지

광고물의 무단첩부 금지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2.2.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2.2.1.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 장소 및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 ※ 이 경우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대상 광고물 등	위반내용	제재 내용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시·도지사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전단).

▪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대상 광고물	위반내용	제재 내용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밖에도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허가 및 신고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경관, 미풍양속 보존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

▪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3항).

▪ 시·도지사는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기준 강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 은행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2.2.2.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지역 등의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정치활동 자유 등의 부당침해 금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래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관혼상제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함)·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함)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정치활동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요?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524, 2013.12.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조>

▪ 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2.3.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2.3.1.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제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설치 제한

▪ 다음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 이상인 간판은 제외)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공공단체의 범위

• 위의 공공단체는 다음의 법인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다음에 따른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해야 함)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 위의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해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 국가 등이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 국가 등은 위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6항).

국가 등의 재원 마련 목적의 광고 제한

재원 마련 목적 광고에 대한 제한

▪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다음의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옥외광고사업 시 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 위의 옥외광고사업은 다음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 등과 광고물 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물 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릅니다.

3.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합니다.

4.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위의 4.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 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 등과 협의해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3.1.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3.1.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 대상 광고물

▪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이용 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교통수단(③ 중 비행선은 제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1. 사업용 자동차 2.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음식판매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5. 대여자전거
10	선전탑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특정광고물	모든 특정광고물

허가 대상 게시시설

▪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4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모든 입간판
6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모든 벽보
9	전단	모든 전단

신고 대상 게시시설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3.1.2.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1.에 따른 원색사진 및 2.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해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수수료의 납부

▪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 시장 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전단).
> -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후단).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의 반려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청문의 실시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3.1.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사항의 변경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본문).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

제출 서류

▪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신고증명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 시장등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

3.2.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3.2.1. 도로점용허가 신청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와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도로법」 제2조제5호).

※ 도로의 범위

-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로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본문).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법」 제66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예: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합니다.
7.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해야 합니다.

점용료의 감면

▪ 도로의 점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8조제2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도로법」 제7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법」 제114조제6호).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위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 후단).

4.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4.1.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4.1.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의 문자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도형, 모형 등의 사용

▪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통행방해 금지 및 안전설치 의무

▪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간판의 총수량 제한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 광고물의 실명표시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방법의 완화

표시방법이 완화되는 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다만, 이 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음)

표시방법 완화 또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시 주민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특정구역 지정 해제 시 행정예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 지정 해제 사실의 고시

▪ 시·도지사는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표시방법 완화의 예외

▪ 특정구역에서도 다음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17조제4호).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도록 한 것(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도 포함)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도 포함)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가 되도록 한 것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건물면적에 따른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의 추가설치

▪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4.1.2.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1).

순번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돌출간판		3년 이내
3	공연간판		2년 이내
4	옥상간판		3년 이내
5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는 현수막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8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9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10	벽보		15일 이내
11	전단		15일 이내
1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비행선은 제외), 건설기계 및 대여자전거	3년 이내
		비행선	30일 이내
15	선전탑		30일 이내
16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18	특정광고물	3년 범위에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1항제3호).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함)인 경우는 제외]

조례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

▪ 표시기간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시장 등은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1.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4.2.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4.2.1.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 간판"이란?

▪ "벽면이용 간판"이란 다음의 간판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벽면이용 간판>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 포함)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가. 아래의 2·3·4 또는 업소표지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 이하의 간판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아래 6.을 준용합니다.

   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 이내, 두께는 20㎝ 이내여야 합니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m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m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적은 225㎡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로서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m 이내여야 합니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 이내, 입체형간판은 45㎝ 이내여야 합니다.

7.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 제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위 4.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 3., 5.,또는 6.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5.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 6.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9. 위 1.부터 8.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2.4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 포함)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 이내여야 합니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란?

▪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돌출간판>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조례)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돌출간판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간판은 제외합니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4.2.2. 옥상간판

"옥상간판"이란?

옥상간판의 개념

▪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

<옥상간판>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지역 제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

▪ 옥상간판은 다음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1호가목 단서).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 옥상간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본문).

구분	해당 건물 층수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은 제외)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제외)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군의 경우 (시의 읍·면 지역 포함)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위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단서).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호).

-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 간판의 높이는 180㎝ 이하일 것
  -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옥상간판의 규격, 표시방법 등

옥상간판의 규격 기준

▪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호).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는 30m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 이내여야 합니다.
-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합니다.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

▪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본문).

1.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3.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4.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다만, 위 1. 및 2. 간판은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으며, 위 3. 및 4.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단서).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등에서의 옥상간판 설치금지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

건축사에 의한 옥상간판의 설계

▪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 높이가 180㎝ 이하인 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간판의 표시방법

▪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1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및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릅니다.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2.3.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 이용 간판”이란?

▪ “지주(支柱) 이용 간판”이란 다음의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6호).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후단).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목적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 전자게시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전기 사용 광고물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따릅니다.

▹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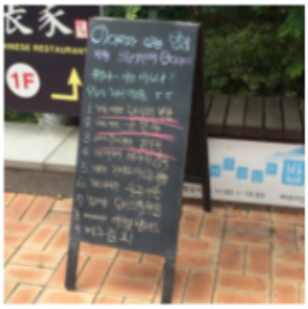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 이내이어야 합니다.

입간판의 표시방법

“입간판”이란?

▪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

<다양한 형태의 입간판>





입간판의 표시방법(조례)

▪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그 밖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간판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입간판 표시방법

입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합니다.

·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로 해야 합니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3항).

4.2.4. 공연간판, 현수막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이란?

▪ "공연간판"이란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공연간판>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공연간판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m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m 이내, 세로 2m 이내 또는 가로 2m 이내, 세로 3m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이란?

▪ "현수막"이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

현수막의 표시방법

▪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표시방법**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 포함)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합니다.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이내여야 합니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위 3.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1. 가로길이는 70㎝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해야 합니다.
2. 위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중 3.부터 5.까지를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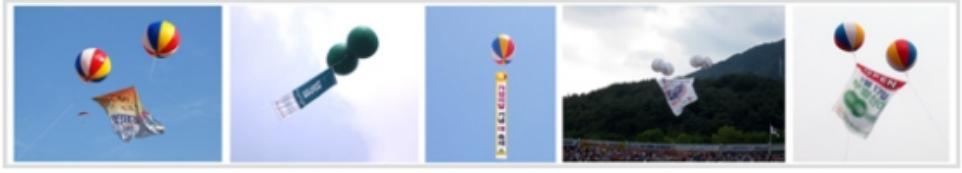
4.2.5. 애드벌룬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이란?

▪ “애드벌룬”이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호).

<애드벌룬>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조례)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애드벌룬 표시방법**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m 이하, 수량은 4개 이해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m 이상 50m 이하로 해야 합니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는 안 됩니다.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높이는 10m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를 준용합니다.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2.6. 벽보 및 전단

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란?

▪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 벽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보 표시방법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합니다.
2.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릅니다.

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이란?

▪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전단의 배부방법(조례)

▪ 전단의 배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단의 배부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단 배부방법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2.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합니다.

4.2.7.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본문).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함)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 다만, 이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단서).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다음의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음]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2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일반적인 교통시설에서의 표시방법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본문).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 내부에서의 표시방법

▪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건설기계, 대여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3호 및 제2조제1항제2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에서의 표시방법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항공기 등에서의 표시방법

▪ 항공기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시장 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외부에서의 표시방법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선박 외부에서의 표시방법

▪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의 표시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 창문 부분,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 부분(이하 "작업장치"라 함),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작업장치·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 보행방해 금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의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대여자전거에서의 표시방법

▪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항).

4.2.8. 선전탑, 아치광고물

선전탑의 표시방법

"선전탑"이란?

▪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4호).

<선전탑>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선전탑의 표시방법(조례)

▪ 선전탑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전탑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선전탑 표시방법

선전탑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아치광고물"이란?

▪ "아치광고물"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5호).

<아치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아치광고물 표시방법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2.9. 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다음의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6호).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창문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각의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 이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 이내, 길이 3m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5항).

4.2.10.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전기사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
-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백열등·형광등 사용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과 이웃한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기 사용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함)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위 1.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1. 위의 네온류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3. 위의 2.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위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 위의 2.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3.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4.3.1. 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란?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개념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자율구역”이라 함)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이 지정을 신청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자율관리협정의 체결

▪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사항

▪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

▪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은 시장 등에게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자율관리구역 지정사항의 고시

▪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자율관리구역 지정 후 자율관리협정 가입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추가된 단락

자율관리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주민협의를 통한 자율 지정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업무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 위의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율관리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 신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 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율관리구역을 다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율관리구역의 범위와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후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취소

▪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8항).

4.3.2. 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개념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 의견청취

▪ 시장 등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

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고시

▪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전단).

▪ 이 경우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후단).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의 지원

▪ 시장 등과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4.3.3.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개념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전단).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입법 예고 보도자료, 5p.>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범위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9.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신청

▪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3항).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

▪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5항).

자유표시구역 지정사항의 게재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기본계획의 변경

▪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① 변경된 기본계획의 제출, ② 협의, ③ 심의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 협의 및 ③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7항).

지정취소 사실의 게재 및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5.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5.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5.1.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다음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 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을 포함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위 1.부터 7.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안전점검 기준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		안전점검기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함)·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안전점검 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함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제출 기한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함)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3.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4.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5.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증명서의 발급

▪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의 납부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점검시기
- 점검대상
- 점검방법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 시장 등은 위의 ①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②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 포함)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제2항).

5.2.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5.2.1.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명령

불법 광고물의 제거 및 필요조치에 대한 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이하 내용들에도 같음).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시장 등은 위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행정대집행 특례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규정

▪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이러한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광고물 등의 보관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함)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

▪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광고물의 매각

▪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절차를 준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 광고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

-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광고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 등의 반환

▪ 시장 등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등

불법 광고물 설치자의 정보제공 요청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불법 광고물 설치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 이러한 정지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 이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의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청소년보호위원에의 심의요청

미풍양속 및 청소년 정서 저해 광고물에 대한 심의요청

▪ 시장 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시장 등은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합동점검의 실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의 실시

▪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시·도지사는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 점검의 필요성
- 점검 대상 지역
- 점검 시기·방법 등
-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 등과의 협력사항
-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합동점검 결과의 통보 및 필요조치의 이행

▪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위의 불법광고물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의 명령, 행정대집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 시장 등이 위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위의 필요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6항).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4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계고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의 중지

▪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5항).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 위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항).